

귀곡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일괄 위·수탁 협약서

2020



함양군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 『귀곡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일괄 위·수탁 협약서

『균형발전특별법』 제1조, 제3조, 제40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10호, 제58조~61조, 제114조~116조 등에 근거를 두고, '20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 및 시행지침에 따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위탁자 함양군수(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이하 “수탁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귀곡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1. 사업명 : 귀곡지구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2. 위치 : 경남 함양군 안의면 귀곡리 일원
3. 권역면적 : 7.1ha
4. 총사업비 : 1,737백만원(국비 1,300, 지방비 437)
5.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3년간)
6. 사업내용 : 생활·위생·안전 등 기반시설 정비, 주택정비, 마을 환경 개선,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계획 등 사업전반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사업 시행 관련 위·수탁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위탁업무 및 위탁기간)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괄 위탁한다.

1.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 및 공사시행, 공사감리 등 사업시행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3. 사전석면조사, 사전구조안전성검토, 매립문화재지표조사,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가 추진하고 “위탁자”는 본 업무에 필요한 행정지원
4. 편입부지 매입(공공용지 포함)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준공 후 인계 업무, 성과평가 및 준공백서 작성 업무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 하여 추가되는 업무

② 위탁기간은 본 협약일로부터 최종 사업준공일(준공결과 보고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금으로 구분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보조금(국고 및 지방비)은 “위탁자”가 확보한다.

② 자부담금은 자부담 시설의 참여대상자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한 “수탁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관리·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교부 및 정산) ① “위탁자”는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 전반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국고, 지방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매년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 공정 계획표, 연도말 정산서(지출증빙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조의 위탁 업무 종료 시 준공정산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교부받은 사업비의 잔액은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용지매수 및 보상) ①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매수 및 보상 업무는 공사착공 이전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가 추진하고,





“수탁자”는 본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②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보상비 지급 등)
2. 토지 및 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
3. 분할측량 및 확정측량, 지적공부정리 신청업무
4. 분묘의 개장공고 및 이장 업무
5. 토지수용에 대한 필요한 서류 작성
6. 국·공유지에 대한 양·증여 처리시 서류 작성
7. 기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① “수탁자”는 사업의 조기착수를 통한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위(수)탁 협약체결과 동시에 총사업비에 맞추어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농식품부와 대면협의 결과 농식품부로부터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고시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우선순위, 사업시행 준비상황, 연차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위탁자”에게 시행계획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농어촌정비법 및 사업지침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 고시, 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수탁자”는 시행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2조에서 정한 대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구역안의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 시공사 선정, 공사감독, 기성 및 준공검사와 하자 보수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권한, 책임으로 수행한다.

④ “수탁자”는 제2조의 위탁업무 수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의거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의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⑤ “위탁자”는 “수탁자”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고시 및 타법에 의한 인·허가 처리와 보전임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행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위탁요율 적용 및 대가의 지급) ① 기본계획수립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으로 산정하고, 세부설계·공사감리·사업관리 등 대가의 요율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에 위탁요율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②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공공디자인 강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설계를 건축사에 의뢰하여 시행한 경우 건축부분 설계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4 “건축설계 대가요율”을 적용한다.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사전재해영향성검토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변경, 사전석면조사, 문화재지표(발굴)조사, 준공백서 작성 등의 추가업무 수행이 필요할 경우, 소요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해 계상하되, 사업관리 외의 비용으로 계산하고 사업비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④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시설물 인계전에 발생한 유지관리비는 우선 사용하고 사업비 정산 시 반영한다.

⑤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업과정에서 천재지변, 사업지구 위치 변경, “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협의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위탁자”는 중단 시점까지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전문분야 업무 외부용역) “수탁자”는 본 업무를 직접 추진 하되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세부설계, 공사감리, 타당성분석 등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문서관리 및 인계) ① “수탁자”는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 등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협약이 종료되면 관련문서, 준공백서, 증빙서류 및 도면 등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사항) 이 협약서의 해석 또는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지침 및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추진상황 보고) “수탁자”는 사업시행 기간동안 분기마다 (분기별 말일까지) 추진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사업 시행 중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위탁자”에게 즉시 협의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완료 및 준공) ① “수탁자”는 사업이 완료(부분준공 포함) 되면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탁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에 따라 준공처리를 한다.

② “수탁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위탁자”명의로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한다. “위탁자”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매입비 등의 해당 재산에 주민 자부담금이 포함된 경우는 보조금 지원 비율 및 주민 자부담금 비율에 따른 공유 지분 등기 및 부기등기 등을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설정한다.

제13조(관련자료 및 정보교환)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호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14조(비밀유지)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한 성과와 본 협약으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인지세의 면세) 본 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7호에 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 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함양군  
함양군수

서춘수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강창기

